

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 
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 
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2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**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 
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 
조례안」**

**檢 討 報 告 書**

**1. 경 과**

의안 제105호로 2023년 2월 9일 이성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**2. 제안이유**

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,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2. 9. ~ 2023. 2. 13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수도물 절수 생활화와 수도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,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「수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등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인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「수도법 시행규

- 칙」 제1조의2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 - 안 제7조에서는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, 홍보 및 표창,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
-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현상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·전남지역에서도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통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
-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“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, 전국적으로는 50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임.
- 이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

## 수도법

**제6조(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)** ①시·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1. 연차별 누수량(漏水量)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
2. 연차별 유수수량(有收水量,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)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
3.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
4.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~ ④ (생략)